2026년 수입식품 영업자 가이드: 수입의 정석 2편

#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
# 함께 하는 안전한 수입관리



## [필독] 영업자 의무사항: 위생교육

수입식품 영업자라면 매년 3시간의 위생교육 이수는 필수입니다.

수입식품정보마루 서울지방식약청

| 위생교육 기관 | 홈페이지 | 연락처 |
|---|---|---|
| 한국식품산업협회 | www.kfia21.or.kr | ☎ 1577-3869 |
|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| edu.khff.or.kr | ☎ 1661-2371 |
| 한국식품안전협회 | safetyfood.or.kr | ☎ 02-2051-7006 |

### Q. 수입식품 영업자가 교육을 안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?

A.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 * 1차 위반: 30만원 → 2차 위반 60만원 → 3차 위반 90만원

### Q.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폐업신고를 했는데 수입식품·위생용품 영업 폐업신고도 별도로 해야 하나요?

A. 네. 관할 세무서 사업자등록 폐업 후 수입식품·위생용품 수입업에 대한 식약처 폐업신고도 반드시 해야 합니다.

▶ 방문 또는 온라인(식품안전나라 www.foodsafetykorea.go.kr > 기업회원 가입 및 로그인 > 통합민원창구 > 수입식품등 폐업신고 / 문의: 1899-5590)

## 수입 신고 및 식품안전 동향 정보




바로가기

• 알기쉬운 수입식품등 수입신고 안내서(국문, 영문)




바로가기

• K-푸드 미래 논의! 식약처 'APFRAS(아프라스) 2026' 개최

## 식품안전지식 퀴즈(영업자편)

### 나의 식품안전 지식은 몇점일까요?

재미있는 OX 퀴즈로 유용한 정보를 학습하고, 여러분의 식품안전지식 수준을 바로 확인해보세요.







바로가기